

□ 추진 배경

-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
-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'고용보험 미적용자'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

*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(2018. 7. 5.)의 핵심 과제로 추진

□ 제도 내용

- (지원 대상)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

* 1인 사업자, 특수 고용직, 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,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

- (지원 수준) 총 150만 원 지급(월 50만 원×3월분)

- (시행 시기) 2019. 7. 1.부터 신청 및 접수

*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

* 유산·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
- (신청 방법)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

- (신청 시기)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- (지급 결정 및 지급)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



1인 사업자,
프리랜서
엄마라면!

**고용보험
미적용자
출산급여**

**고용보험에
가입하지 않았어도,
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
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!**

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
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
•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·공동사업자
(부동산임대업 제외)
•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
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
•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
—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
급여의 수급요건 중 '피보험단위기간
180일'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
—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
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
— 고용보험 미상용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

지원내용 총 150만원 (월 50만원 X 3월분)

• 유산·사산의 경우에도 일정한액이 지급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 1350)로 문의하세요.



아내가
출산한
아빠라면!

19. 10. 1부터
배우자 출산휴가가
**10일로
늘어납니다**

**배우자
출산휴가급여
챙기세요!**

1인 사업자,
프리랜서
엄마라면!

**출산급여
챙기세요!**








가족을 위해 신청하세요!

고용보험 홈페이지
(www.eigo.kr)에서 신청하거나,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!

자세한 내용은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 1350)로 문의하세요.



**육아기
근로시간
단축 급여**

**만 8세 이하
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
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
신청하세요!**

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
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
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

지원내용 하루 1시간 단축분(주 5시간)에 대해서는
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00만원)의
급여가, 나머지 단축분은 현행대로 통상
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)의 급여가
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.

• 10월 1일 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
1년 보장하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
까지 가능합니다.

• 10월 1일 부터는 하루 1시간 단축(주 근로시간 15~35시간)도
가능해집니다.

아내가
출산한
아빠라면!



**배우자
출산휴가급여**

**배우자가 출산했다면
아빠도 10일로 늘어난
배우자 출산휴가를
신청하세요!**

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를
청구하는 근로자
•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
180일 이상
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
지원내용 유급 5일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
(휴가시작일 기준 통상임금, 월 상한 200만원)

신청기한 휴가 시작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
이후 12개월 이내 (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
신청)

• 10월 1일 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되며,
청구기간도 90일로 늘어납니다.

• 휴가기간이 확대된 만큼,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신청시기 출산일 ~ 출산후 1년 이내에 편만 신청

제출서류 ① 출산급여 신청서
② 소득활동 증명서류
③ 유산·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♥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
신청시기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
12개월 이내 신청분할 사용 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

제출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
②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
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
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

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
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
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
제출서류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
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
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④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
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